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63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7. 9.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63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9호, 2016.12.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try of Trade
try and Energy

1. 개정이유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투명 포장한 농·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식품 표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취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하여 표시기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10-17 10:23:39

2. 주요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 면제 규정 마련 [안 Ⅱ-2-가-1)-가), 안 Ⅱ-2-가-2)]

1) 연구결과 소아에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잣'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

2)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재료명을 사용한 경우 소비자가 제품명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3) 식품 알레르기 예방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에 취급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안 Ⅱ-2-마]

1) 취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필요

2)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및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다. 조리식품 사진을 사용한 제품에 '조리예' 등의 문구 표시 [안 Ⅱ-1-너]

1) 조리식품 포장지에 실제 내용물과 차이가 큰 연출된 사진을 넣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품 증가

2) 사진 근처에 '조리예'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인삼 뿌리 이외의 부위 사용시 사용부위 표시 [안 Ⅲ-1-가-2)-사)]

1) 인삼의 뿌리 이외의 부위(열매, 잎 등)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인삼으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는 인삼의 뿌리로 인식

2) 인삼 사용부위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

마. 신맛의 강산성 캔디류에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안 Ⅲ-1-나-1)-나)-(15)-(라)]

1) 신맛의 강산성 캔디를 한번에 여러 개 섭취하거나 장시간 물고 있을 경우 어린이의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한 사례 발생

2)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로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바. 메주에 대두 함량 표시 [안 Ⅲ-1-나-20)-나)-(15)-(마)]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메주의 대두 함량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표시를 통해 대두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

2) 메주에 대두 함량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10-17 10:23:39

사.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표시 생략 규정 삭제 및 영세업자가 생산한 자연상태 식품 표시 생략 규정 신설 [안 Ⅲ-1-나-31)-다)-(1)]

1) 투명포장한 농·임·축·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은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어 표시가 없는 냉동수산물을 장기간 유통·판매하거나 농산물의 내용량 미달 등 문제 지속 발생

2)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표시 생략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영세농민 등이 채취·생산한 자연상태 식품 표시 생략 규정을 신설하여 표시 의무화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아.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100% 환원주스에 식품첨가물 함유 사실 표시 〔안 Ⅲ-3-바〕

1)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100%의 표시가 가능하나,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100% 환원주스 등의 경우 소비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음

2)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100% 표시를 할 경우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자. 판매업소의 상표, 로고 표시 금지 [안 Ⅱ-3-아]

1) 판매업소의 상표 등이 표시된 제품의 경우 소비자는 판매업소가 해당제품을 제조·가공 또는 기획·관리하는 것으로 오인·혼동

2) 식품 등 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의 위탁자 이외의 판매업소의 상표, 로고 등은 표시 금지

차. 제품명으로 통칭명칭 사용시 함량 규정 삭제 〔안 『별지 1』1-가-3)-가) 및 나)〕

1) 제품명에 통칭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가지 이상 원재료 합계량이 15% 이상이어야 하나, 통칭명칭에 대한 해석의 혼란과 일부 식품 유형의 제품은 기준·규격에 의해 15% 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 발생

2) 현행 통칭명칭 규정을 삭제하고, 통칭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카. 원재료명 및 성분명에 해당하는 도안 강조시 함량 표시 〔안 『별지 1』1-바-1)-바, 『별지 1』1-사-2)〕

1) 원재료명에 해당하는 도안, 그림 등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는 제품에 해당 원재료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음

2) 원재료명 및 성분명에 해당하는 도안, 그림 등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선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10-17 10:23:39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8,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000호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9호, 2016.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0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Ⅱ. 너목부터 머목까지를 더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은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Ⅱ. 2. 가. 1) 가) 중 “포함)를”을 “포함), 잣을”로 한다.

Ⅱ. 2. 가. 2) 중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10-17 10:23:39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Ⅱ. 2. 마. 중 "표백분"을 "차아염소산칼슘,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로 한다.

Ⅱ. 3. 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100%"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내에 식품첨가물(표시대상 원재료가 아닌 원재료가 포함된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제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

Ⅱ. 3.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품 등 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의 위탁자의 것 이외의 상표, 로고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 및 자연상태의 식품은 제외한다.

Ⅲ. 1. 가. 2)의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인삼은 뿌리 이외의 부위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위의 명칭을 표시하고, 2가지 이상의 부위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여야한다.

(예시) 인삼의 열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삼열매'로 표시, 인삼의 열매를 사용하여 농축액을 제조한 경우 '인삼열매농축액'으로 표시, 인삼의 뿌리와 열매로 농축액을 제조한 경우 '인삼농축액(뿌리80%, 열매20%)' 등

Ⅲ. 1. 나. 16) 나)의 (4) 및 Ⅲ. 1. 나. 17) 가)의 (4) 중 "멸균"을 각각 "고체식품 및 멸균"으로 한다.

Ⅲ. 1. 나. 1) 나) (15)의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강산성(pH 3.0 미만)의 캔디류에는 "신맛이 강해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10-17 10:23:39

Ⅲ. 1. 나. 20) 나) (15)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메주는 대두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Ⅲ. 1. 나. 27) 다) (3) 단서 중 “원재료”를 “원재료(물 제외)”로 한다.

Ⅲ. 1. 나. 31) 나) (1) 중 “제품명(내용물”을 “내용물”로, “품목)”을 “품목”으로 하고,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취・생산자, 채취・생산자단체명(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포함)

(3) 채취・생산연월. 다만, 채취・생산연월이 서로 다른 내용물 또는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연월을 표시

Ⅲ. 1. 나. 31) 다)의 (1)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임업인· 수산인 및 생산자단체의 기준 또는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채취・생산한 농・임・수산물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1』 1. 가. 3)의 가)와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의 나)를 다)로 하며, 종전의 다)와 라)는 삭제한다.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흑마늘○○(흑마늘 ○○%)

(예시) 딸기○○(딸기추출물 ○○%(고형분 함량 ○○%))

(예시) 과일○○(사과 ○○%, 배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유형명,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식품유형명,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의 함량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식품유형명 사용 예시) “○○토마토케첩”(식품유형: 토마토케첩), “○○조미김”(식품유형: 조미김)

(즉석섭취・편의 식품류명 사용 예시) “○○햄버거”, “○○김밥”, “○○순대”

(요리명 사용 예시) “수정과○○”, “식혜○○”, “불고기○○”,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10-17 10:23:39

“피자○○”, “짬뽕○○”, “바비큐○○”, “갈비○○”, “통닭○○”

『별지 1』 1. 다.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조연월일이 서로 다른 각각의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빠른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1. 바. 1) 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원재료명(과일・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 포함) 또는 이에 해당하는 도안, 그림, 사진, 문구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별지 1」 1. 가. 3) 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별지 1』 1. 사.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분명 및 함량

1)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성분명을 영양성분 강조표시에 준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양성분 강조표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성분명 또는 이에 해당하는 도안, 그림, 사진, 문구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별지 1」 1. 가. 3) 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별지 1』 3. 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업소명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나.를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의 경우에는 제조업소명 대신 제조위탁업소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수입기구에 제조위탁업소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업소명 : ○○” 또는 “제조위탁업소명 : ○○”, 수입기구의 경우 “제조업소명 : ○○” 또는 “제조위탁업소명 : ○○(원산지)”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10-17 10:23:39

부칙 <제2017-00호, 2017.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 공통표시기준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1. 표시방법
가. ~ 거. (생 략)	가. ~ 거. (현행과 같음)
<신 설>	너.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은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너. ~ 머. (생 략)	더. ~ 버.(현행 너. ~ 머.와 같음)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1) 표시대상	1) 표시대상
가)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_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	가) ----------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10-17 10:23:39

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포함), 잣을 ----------
2) 표시방법	2)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식품첨가물의 주의사항 표시	마. 그 밖에 식품첨가물의 주의사항 표시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 식품첨가물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3.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3.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100%"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내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100%"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내에 식품첨가물(표시대상 원재료가 아닌 원재료가 포함된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제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10-17 10:23:39

	하여야 한다. (예시)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식품 등 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의 위탁자의 것 이외의 상표, 로고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 및 자연상태의 식품은 제외한다.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인삼 또는 홍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인삼 및 홍삼 성분을 함유한 제품)	2)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인삼 또는 홍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인삼 및 홍삼 성분을 함유한 제품)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인삼은 뿌리 이외의 부위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위의 명칭을 표시하고, 2가지 이상의 부위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인삼의 열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삼열매'로 표시, 인삼의 열매를 사용하여 농축액을 제조한 경우 '인삼열매농축액'으로 표시, 인삼의 뿌리와 열매로 농축액을 제조한 경우 '인삼농축액(뿌리80%, 열매20%)' 등
나.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나.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과자류	1) 과자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표시사항	나) 표시사항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기타표시사항	(15) 기타표시사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강산성(pH 3.0 미만)의 캔디류에는 "신맛이 강해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10-17 10:23:39

16) 다류 가) (생 략) 나) 표시사항 (1) ~ (3) (생 략) (4) 유통기한(멸균한 액상제품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차의 경우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 (5) ~ (15) (생 략) 17) 커피 가) 표시사항 (1) ~ (3) (생 략) (4) 유통기한(멸균한 액상제품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 (15) (생 략) 18)·19) (생 략) 20) 장류 가) (생 략) 나) 표시사항 (1) ~ (14) (생 략) (15) 기타표시사항 (가) ~ (라) (생 략) <신 설>	16) 다류 가) (현행과 같음) 나) 표시사항 (1) ~ (3) (현행과 같음) (4) --------고체식품 및 멸균---------- (5) ~ (15) (현행과 같음) 17) 커피 가) 표시사항 (1) ~ (3) (생 략) (4) --------고체식품 및 멸균---------- (5) ~ (15) (현행과 같음) 18)·19) (현행과 같음) 20) 장류 가) (현행과 같음) 나) 표시사항 (1) ~ (14) (현행과 같음) (15) 기타표시사항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메주는 대두의 함량

21) ~ 26) (생 략) 27) 주류 가)·나) (생 략) 다)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1)·(2) (생 략) (3) 주정 및 증류주(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는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 및 각각의 증류주 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증류 후 사용되는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은 표시하여야 한다. 28) ~ 30) (생 략) 31) 자연상태 식품 가) (생 략) 나) 표시사항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3) 제조연월일(포장일 또	을 표시하여야 한다. 21) ~ 26) (현행과 같음) 27) 주류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1)·(2) (현행과 같음) (3) ----------. ---------- 원재료(물 제외) ----------. 28) ~ 30) (현행과 같음) 31) 자연상태 식품 가) (현행과 같음) 나) ------ (1) 내용물---------- 품목 (2) 채취·생산자, 채취·생산자단체명(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포함) (3) 채취·생산연월. 다만,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10-17 10:23:39

는 생산연도)	채취·생산연월이 서로 다른 내용물 또는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연월을 표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다)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1) 식품 중 농·임·축·수산물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임업인· 수산인 및 생산자단체의 기준 또는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채취·생산한 농·임·수산물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가. 제품명	가. 제품명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 ----------.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칭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10-17 10:23:39

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흑마늘○○(흑마늘○○%) (예시) 딸기○○(딸기추출물 ○○%(고형분 함량 ○○% 또는 배합 함량 ○○%) <신 설>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흑마늘○○(흑마늘○○%) (예시) 딸기○○(딸기추출물 ○○%(고형분 함량 ○○%)) (예시) 과일○○(사과 ○○%, 배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유형명,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식품유형명,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의 함량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식품유형명 사용 예시) "○○토마토케첩"(식품유형: 토마토케첩), "○○조미김"(식품유형: 조미김)		(즉석섭취·편의 식품류명 사용 예시) "○○햄버거", "○○김밥", "○○순대" (요리명 사용 예시) "수정과○○", "식혜○○", "불고기○○", "피자○○", "짬뽕○○", "바비큐○○", "갈비○○", "통닭○○" 다) (현행 나)와 같음) <삭 제>
		나) (생 략) 다)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2가지 이상(예 : 과일의 경우 사과·배·포도 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제품명 : 과일○○ 원재료명 : 사과 ○○%, 배 ○○% 등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10-17 10:23:39

라) 오곡밥, 수정과, 식혜 등과 같은 식품으로서 동 제품에 전래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적정량 함유되어 통상 고유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 또는 전통적인 식생활관습에 따라 제조되는 "김밥"중 "김"과 같은 성분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다.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조연월일이 서로 다른 각각의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빠른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바. 원재료명	바. 원재료명
1) 식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식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별지 1」1. 가. 3) 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바) 원재료명(과일·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 포함) 또는 이에 해당하는 도안, 그림, 사진, 문구를 - 경우("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사. 성분명 및 함량	사. 성분명 및 함량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성분명을 영양성분 강조표시에 준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양성분 강조표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성분명을 영양성분 강조표시에 준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양성분 강조표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 설>	2) 성분명 또는 이에 해당하는 도안, 그림, 사진, 문구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2017-10-17 10:23:39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별지 1」1. 가. 3) 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3.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	3.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옹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	나. 옹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
1) 업소명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나. 를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기구의 경우에는 제조업소명 대신에 제조위탁업소명(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업소명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나. 를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의 경우에는 제조업소명 대신에 제조위탁업소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수입기구에 제조위탁업소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수입기구의 경우 “제조업소명 : ○○” 또는 “제조위탁업소명 : ○○(원산지)”	(예시) “제조업소명 : ○○” 또는 “제조위탁업소명 : ○○”, 수입기구의 경우 “제조업소명 : ○○” 또는 “제조위탁업소명 : ○○(원산지)”